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7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닭고기(한계수량 30,000톤),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톤), 대파(한계수량 5,000톤), 무(수입 전량)에 대하여 각각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나. 감자칩 제조용 감자 13,000톤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customs21c@korea.kr](mailto:customs21c@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customs21c@korea.kr

- 팩스 : 044-215-807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 법령 입법예고  
에서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